

근로기준감독국

(Division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DLSE)

으로도 일컬어지는 노동청은 가주산업관계부 산하에 있습니다. 노동청은 주정부기관으로서 귀하의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를 심사 및 판결합니다. 노동청은 최저근로기준에 미달하고 불법적인 근무조건에서 일하는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을 준수하는 고용주가 준수치 않는 경쟁업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감독하고 있습니다.

체불임금청구를 위해 소셜시큐리티번호 혹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는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임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노동청은 귀하가 사용하는 언어에 능숙한 통역관을 제공합니다.

노동청은 다음과 같은 부속과들을 통해 노동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임금청구 판결과 (WAGE CLAIM ADJUDICATION) 는 개인별 미지급 임금청구 및 기타 노동법위반 사건을 심사하고 판결합니다.

봉제업 임금청구판결과 (GARMENT WAGE CLAIM ADJUDICATION) 는 "AB633" 으로 알려진 "봉제노동자보호법"이 적용되는 봉제 노동자들의 임금청구를 심사하고 판결합니다.

현장단속과 (BUREAU OF FIELD ENFORCEMENT-BOFE) 는 고용주가 최저임금, 초과근무수당 혹은 식사 및 휴식시간을 노동자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이를 조사합니다. 현장단속과는 고용주가 상해보험, 미성년자 노동, 기록보관, 허가 또는 등록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신고이 들어오면 이를 조사합니다.

정부공사과 (PUBLIC WORKS) 는 공공건축과 관련된 노동법 위반 사건을 조사합니다. "압도하는 직종별 임금" 이란 주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보다 높은 수준으로서 대부분의 공공건설 프로젝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입니다.

보복수사과 (RETALIATION COMPLAINT INVESTIGATION) 는 보복고소, 고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보복"이란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권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을 이유로 고용주가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노동시간 혹은 임금을 삭감할 때 발생합니다.

판결집행과 (JUDGMENT ENFORCEMENT) 는 노동청이 고용주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후 노동자의 판결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일한 임금을 받지 못한 봉제업 노동자들은 고용한 의류하청업자 (CONTRACTOR)를 상대로 체불 (미지급) 임금 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의류제조에 관련된 의류제조업자들 (MANUFACTURERS)을 상대로도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매업자 (RETAILER)도 봉제업 노동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책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의하여 이러한 의류제조업자 (MANUFACTURERS)와 소매업자 (RETAILER)를 "보증인 (GUARANTORS)" 이라고 부르며 반드시 봉제업 노동자의 임금지급을 보증해야합니다.

기본적인 노동법 보호사항인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과 같은 위반을 **임금절도**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임금절도를 당했다면 노동청에 체불임금 청구를 제기하세요.

체불 (미지급) 임금을 받는 방법





미지급 임금 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할 일

청구기간 확인

- 최저임금, 초과근무수당, 불법적인 급여공제 혹은 비용상환금 미지급에 관한 청구는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보다 많은 액수를 지급하겠다는 구두계약에 기반한 청구는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문서로 된 계약에 기반한 청구는 4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조사

자신의 청구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세요:

- 고용주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 고용주의 자동차 라이센스 번호
-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서 일한 날들과 시간들을 기록 하세요. 개인이 사용했던 달력이나 노트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 사본
- 의류 꼬리표, 상표, 그리고 RN 번호
- 제작이나 운송에 대한 정보
- 디자인에 대한 정보

노동청은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은 이민신분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으며 다른 정부기관에 귀하의 이민신분 정보를 보고하지 않습니다.



2

청구제기

노동청 지역사무소를 방문하여 "봉제업 초기 청구서" (Garment Initial Claim) 라는 양식을 받거나 웹사이트 (www.dir.ca.gov/dlse) 에서 다운로드를 받아 이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노동청 로스앤젤레스 지역 사무실에서 만 봉제업 노동자 청구서를 받으며 청구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213)620-6330 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320 W. 4thStreet, Suite 450, Los Angeles, California 90013 을 방문하십시오.

로스앤젤레스 지역 사무실에 오시면 근로감독관 ("Deputy") 이 즉시 귀하를 인터뷰하여 초기 청구서 작성을 도와드릴 것 입니다. 만약 귀하가 다른 지역의 노동청 사무실을 찾아가셨다면 로스앤젤레스 지역 사무실의 근로감독관과 전화 인터뷰 약속 날짜를 받아 청구서 작성 도움을 받게됩니다. 만약 어떤 옹호단체의 도움을 받아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노동청에 보냈다면 근로감독관과 인터뷰 예약이 될겁니다.

일단 청구서를 접수하면 지정된 근로감독관은 귀하가 제작한 의류제조업자들 (Manufacturers) 과 소매업자 (Retailer)를 포함해서 다른 관련업자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사 할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은 관련되는 모든 의류 업체 (피고) 들에게 귀하의 청구에 대하여 통보하고 귀하가 근무하던 의류하청업자 (Contractor) 에게 귀하의 청구와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귀하는 근로감독관이 받은 서류들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감독관에게 다른 의류업체 (피고) 들에게 이러한 서류들을 받아 달라고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근로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합니다. 귀하는 합의 협의회와 청문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귀하의 청구는 기각됩니다.



합의 협의회 (SETTLEMENT CONFERENCE) 참석

대부분의 청구는 합의 협의회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은 귀하와 고용주가 청구금액에 대한 합의를 할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협의회 과정에서 귀하는 언제라도 근로감독관과 따로 이야기를 하겠다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협의회 도중에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귀하의 청구는 청문회로 넘어갑니다.

합의:

합의한다는 것은 관련된 의류업체 (피고) 들이 귀하가 청구한 금액보다 적을 수도 있는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귀하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청구를 종료하는데 동의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피고가 여러명일 경우 한명의 또는 몇명의 피고와만 합의 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하지 않은 나머지 피고에 대해선 청구과정을 계속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청구과정에서 언제든지 귀하는 합의제안을 수용 할 수 있습니다. 합의제안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중요한 결정입니다. 아래는 귀하가 결심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 합의제안 수용이유? 귀하의 청구는 즉시 해결되고 임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패할 가능성도 사라집니다. 만약 귀하가 합의를 하지 않고 청구를 계속 진행한다면 고용주는 귀하가 임금 전부혹은 일부를 받기 전에 파산 내지는 폐업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합의제안 거부이유? 합의 결과, 귀하는 법에 보장된 것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너무 낮은 금액의 합의제안이라면 귀하는 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용가능한 합의금을 위해 협상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청문회 (HEARING) 에서 **청구 입증하기**

협의회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면, 귀하는 날짜와 시간이 적힌 청문회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청문회에서 귀하와 관련 의류업체(피고)들은 선서를 하게 되고 청구에 관련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는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하고 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청문관은 귀하가 이전에 노동청에 제출한 어떠한 증빙서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그러한 모든 증거를 청문회에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청문회 **준비하기**:

- 귀하의 청구내용, 즉 몇 시간 일했는지 그리고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청문회에서 귀하가 검토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한 노트와 시간표를 준비합니다.
- 귀하의 청구를 입증할 증빙서류를 청문관과 피고들에게 줄 수 있도록 여러장 준비해 오십시오.
- 귀하의 청구에 유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인에게 이 청문회에 참석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 귀하에게는 피고들과 피고측 증인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측되는 질문목록을 미리 준비하세요.
- 귀하를 변호해 줄 변호사를 청문회에 대동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승소를 하면 피고는 귀하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판결검토 및 고용주가 항소할 경우 도움 받기

청문회가 종료되면 귀하는 "명령 결정 혹은 지급판결 (Order, Decision or Award 혹은 줄여서 ODA)" 로 일컬어지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ODA는 노동청의 판결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으며 만약 고용주가 귀하에게 지불해야 할 몫이 있다면 그 금액을 알려줄 것입니다. 만약 양측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항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이 판결이 최종확정판결이라는 지위를 지니게 되어 법원의 판결문이 됩니다.

만약 고용주가 항소를 제기한다면 해당법원은 노동청의 판결을 참고하지 않은 채 새로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귀하와 고용주는 증거와 증언을 다시 제시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노동자는 노동청의 양식을 이용해 노동청의 변호사들 가운데 한 명을 무료로 선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항소를 제기한다면 귀하는 변호인이 없이 스스로의 입장을 설명해도 무방하고 원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피고로부터 전체 판결금액을 받을 수 없다면 봉제업 특별 자금 (Garment Special Fund) 에 신청하여 벌금을 제외한 미지급 임금만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지정된 근로감독관은 이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 작성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저는 봉제공장 하청업자 (Contractor) 를 위해 일을 했는데 일주일동안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하는 동안 저는 백화점에 판매되는 각각 다른 두개 상표의 드레스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노동청에 임금청구를 했을 때 근로감독관은 상표를 소유한 의류제조업자들 (Manufacturers) 과 백화점도 제 청구의 보증인 (Guarantor) 이라고 했습니다. 의류하청업자 (Contractor) 와 의류제조업자들 (Manufacturers) 그리고 백화점도 잠정적 피고가 될 수 있으며 제 체불임금을 지불해야할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뜻 이었습니다."

봉제업 노동자들은 다음의 권리를 갖고있습니다:

최저임금 (Minimum Wage): 주법에 규정된 최저임금 또는 그 이상을 임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는 귀하의 임금이 성과급 (피스당) 이든, 시간당, 월급제에 의해 결정되건 마찬가지입니다.

예를들어, 만약 의류하청업자 (Contractor) 가 봉제 노동자에게 피스당 \$0.12 을 주기로 했는데 한시간에 40 피스를 끝낼 수 있었다면 (총 \$4.80) 의류하청업자 (Contractor) 는 끝낼 수 있었던 피스의 숫자와 성과급에 상관없이 노동자에게 최소한 주법에 규정된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초과근무수당 (오버타임/Overtime): 초과근무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루에 8시간 이상 또는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한 모든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 그리고
-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한 모든 시간은 통상임금의 2배를 또한, 노동자가 한 근무주에 7일을 일하는 경우에는,
 - 7일째 되는 날의 처음 8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 그리고
 - 7일째 되는 날에 8시간 이상 일한 모든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2 배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청은 체불임금액수와 초과근무수당 계산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봉제업 노동자는 성과급 또는 시간당 지불에 상관없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약속된 시간당 임금 (Hourly Wages Promised): 귀하의 고용주는 약속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고용주가 시간당 10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단지 시간당 8달러만 지급했다면 귀하는 시간당2 달러라는 미지급부분에 대해 임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식사 및 휴식시간 (Meal and Rest Breaks): 대부분의 가주 노동자들은 5 시간마다 방해받지 않는 30분의 무급식사시간과 4시간마다 10분의 유급휴식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의 근무시간이 4시간보다 짧을지라도 휴식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Pay Stub or Wage Statement): 고용주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귀하의 이름과 고용인 번호나 사회보장번호의 마지막 4개의 번호, 전체 임금, 공제사항, 임금지급 기간, 귀하가 만든 피스의 숫자와 피스당 임금, 그리고 귀하의 임금 지급기간에 제작된 의류제조업자들 (Manufacturers) 이름이 기재되어있는 임금명세서를 받아야 합니다.

임금지불 날짜 (Paydays): 귀하는 최소한 한달에 두번 이상 정기적인 날짜에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주는 정기 임금 지불 날짜와 시간, 장소를 알리는 통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공구, 재료, 작업장 기준 (Tools, Supplies and Workplace Standards): 바늘, 가위, 재봉틀등 작업에 필요한 모든 공구와 재료는 귀하에게 비용부담 없이 고용주가 제공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귀하의 고용주는 귀하에게 필요한 안전장비, 적절한 환기, 마실 수 있는 물과 적절한 화장실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해고시 최종급여 (Final Paycheck at Termination): 고용주가 귀하를 해고한 경우, 귀하가 마지막으로 일한 날 (해고한 날) 에 최종급여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면 귀하는 최장 30일까지 고용주가 최종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날 수에 해당하는 임금만큼의 추가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도수표에 대한 벌금 (Penalty for Bounced Checks): 고용주가 준 수표가 잔고부족으로 인해 반환되었다면 귀하는 수표에 기입된 액수 이외에도 최대 30일치 임금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약 고용주가 사업체 이름을 바꾸거나 사업체가 이사를 했다면 제 청구서에 새로운 회사이름을 넣을 수 있나요?

네, 고용주가 사업체의 이름을 바꾸거나 이사를 했다면 새로운 후계업체 (Successor) 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뜻은 귀하의 고용주가 임금을 주지않고 문을 닫은 후 다른 이름으로 사업체를 열었다면 새로운 사업체가 임금 지불할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2. 만약 제 고용주가 임금명세서가 없이 현찰로만 임금을 지불해 주었다면 제 청구를 입증하기 위하여 어떤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을까요?

일한 시간을 증명 할 수 있는 모든 시간기록 (timesheets), 일지 (logs), 개인적 메모, 또는 달력등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만약 서류가 없다면 최선의 추정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3. 미지급 임금을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많은 청구는 합의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귀하는 합의서에 서명한 시점이나 지급약정일에 합의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청문회와 판결문 그리고 집행과정에 수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4. 제가 청구를 제기한 것 때문에 고용주가 저를 해고하거나 강등시키거나 처벌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주법은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권리를 지키려 했다고 해서 고용주가 그를 상대로 보복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해서 고용주는 노동자의 이민신분을 빌미로 협박을 하거나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귀하를 상대로 보복을 했다면 노동청의 보복수사과에 수사 의뢰를 하면 됩니다.

5. 저의 사건과 동일한 노동법 위반을 경험했던 직장 동료들에게 제 청구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귀하의 청구는 동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일 노동법위반 사항들이 여러 동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노동청의 현장단속과 (BOFE) 에 '노동법위반신고 (Report of Labor Law Violation)' 를 접수시킬 수 있습니다. 현장단속과는 모든 신고를 검토하고 귀하의 고용주를 수사하고, 벌금장을 발급 할 수 있으며 동료들은 현장단속과의 조사결과 임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주 노동청 로스앤젤레스 지역 사무실

320 W. 4TH STREET, SUITE 450, LOS ANGELES, CA 90013 (213) 620-6330 www.dir.ca.gov/dlse

